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90879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08.23

www.navicall.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5.28

대표 이메일 주소:

navicall@navicall.net

“앤모빌리티”

정 보 공 개 서

(주)앤모빌리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5 . .

(주)앤모빌리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24, 벽산디지털밸리 1차, 501호

대표전화번호 : 02-2635-8707

대표팩스번호 : 02-6442-8706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총괄사업부, (비공개)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엔모빌리티	나비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24, 5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1.15.	2008.3.1.	서동성	02-2635-8707	02-6442-8706
	법인등록번호	110111-3823641	사업자등록번호	107-87-0458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유윤경	나비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24, 501호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동성	02-2635-8707	02-6442-870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나비콜'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나비콜	나비콜의 나비는 행복, 희망을 의미합니다
상 호	나비콜 OO점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165932호
그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619,805	966,870	3,652,935	2,237,302	-37,615	90,460
2023년	4,691,069	942,113	3,748,956	2,378,139	-59,850	96,021
2024년	5,167,532	1,250,410	3,917,122	2,360,089	122,696	168,165

2) 당사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2020.08.31. 시작으로 가맹사업 관련 실 매출액은 2023년 1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 추정 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 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나비콜) 외, 가맹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유윤경	감사	2016.1.~현재	(주)앤모빌리티 감사	감사
	서동성	대표이사	2020.1.~현재	(주)앤모빌리티 대표이사	경영
	장형철	상무이사	2020.6.~현재	(주)앤모빌리티 상무이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①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2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NAVICALL	영문상표권	2007.1.18. 출원 2008.4.28. 등록	출원번호 2007-0001578 등록번호 제0165932호	(주)엔모빌 리티	2028. 4.28.
나비콜	국문상표권	2007.1.18. 출원 2008.3.28. 등록	출원번호 2007-0001580 등록번호 제0164061호	(주)엔모빌 리티	2028. 3.28.
택시의 콜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권)	콜서비스 시스템 사용 및 대가 수수	2003. 6. 5. 출원 2005. 8.10. 등록	출원번호 2003-0036271 특허번호 제0507232호	(주)엔모빌 리티	2023. 6. 5.
택시콜 콘텐츠를 이용한 콜택시 연결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 (특허권)	택시의 콜서비스제공 및 대가 수수	2006. 1. 3. 출원 2007.10. 1. 등록	출원번호 2006-0000390 특허번호 제0762702호	(주)엔모빌 리티	2026. 1. 3.
콜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콜서버, 단말기 및 저장매체 (특허권)	택시콜 콘텐츠 이용 및 대가 수수	2006.12.27. 출원 2008. 6.11. 등록	출원번호 2006-0134511 특허번호 제0838198호	(주)엔모빌 리티	2026.12.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나비콜] 가맹사업 현황

1. 나비콜을 시작한 날 (가맹점 오픈일) : 2020.08.31

2. 나비콜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엔모빌리티	나비콜	서동성	2020.08.3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24, 벽산디지털밸리1차,501호

3. [나비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운송	택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나비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6			21			15	
서울	-	7	-	-	7	-	-	5	-
부산	-	-	-	-	-	-	-	-	-
대구	-	19	-	-	14	-	-	10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나비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①	계약 해지 ^②	명의 변경 ^③	연말
2020		41	-	-	-	41
2021	41	-	-	11	-	30
2022	31	-	-	5	-	26
2023	26	1	-	6	-	21
2024	21	-	-	6	-	15

[나비콜]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6. [나비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나비콜]이외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나비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④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⑦	15	7,872	해당없음	35,679	해당없음	370	해당없음	
서울	5	12,307	해당없음	35,679	해당없음	370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10	5,655	해당없음	18,480	해당없음	627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나비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나비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4	15	1,70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나비콜] 서울, 대구 지역 가맹점 관리를 본사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사, 지역총판 등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나비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예치할 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예치대상 가맹금이 없으며 아울러 가맹점이 필요한 장비설치 등도 본부에서 무료임
대로 제공하기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
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나비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
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없습니다.

2) 보증금액 :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해당없음	-	-
차량단말기/통신 모뎀 및 설치비	가맹본부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해당없음	중도해지시 가맹사업자는 해당설비를 가맹본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
차량띠지,스티커			해당없음		-
갯등,빈차/예약등			해당없음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택시운송가맹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기준에 준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규정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
종업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기준에 준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내용은 가맹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서비스 이용료	통신비	이동통신사	11,000원	통신사 입금일	데이터통신 사용료로 반환되지 않음
	시스템운영비 (월회비/4년계약시)	가맹본부	37,400원	매월계산서 수취 후 당사에 지급	제반 운영비용으로 반환되지않음
	앱 사용료 (월회비/3년계약시)	가맹본부	16,500원	매월계산서 수취 후 당사에 지급	제반 운영비용으로 반환되지않음
	서비스 중개수수료	가맹본부	서비스종류 ^①	매월계산서 수취 후 당사에 지급	반환되지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①서비스 종류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가맹점 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고 당사의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가맹금

및 추가부담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는 본래 가맹금이 없으므로 가맹금의 반환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사는 본래 가맹금이 없으므로 가맹금의 반환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당사는 본래 가맹금이 없으므로 가맹금의 반환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나비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가 (주)앤모빌리티 측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당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2)항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나비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단말기등 당사의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품목외의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나비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된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귀하와 협의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서비스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서비스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와 귀하는 [나비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 따른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서비스명, 권장가격 및 수수료 참조)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2024	1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나비콜]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4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①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본 조 ‘제3)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③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서비스이용료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나비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1.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제8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제9조 “본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제18조 제2항 “가맹점”의 요건 변동 시 “본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가맹점”이 “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9.“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0.“가맹점”이 계약체결일 또는 회사변경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품목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1.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4.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14일 이전까지 서면으로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서울지역 내에서 귀하가 [나비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나비콜]택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의 경영환경 사정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휴지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친절/안전	서비스 상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
청결	청 결 상 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
복장착용	유니폼 착용 및 청결상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
기기설치	기기관리 및 동작여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
택시외관	띠지/스티커 훼손여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나비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이용고객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㉔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판촉	이용고객대상 판촉물제공	50%	50%	본사와 가맹점 협의를 통해 분담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약관 제13조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포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3자에게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 위약금
시스템 운영비 : 잔여 개월 수 X 4만4천원
앱 사용료 : 잔여 개월 수 X 1만원
일수가 되지 않는 월은 일할 계산한다.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4)귀하가 제6조 제8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본사 정산금에 해당되는 금액-만약 당사로부터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귀하가 가맹계약서 약관의 제9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6)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약관에 기재되어있는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7)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0일 내외	없음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16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	
가맹금 예치	- 없음		
차량단말기 및 통신모뎀	- 설치		
차량띠지, 빈차/예약등	- 설치		
교육	- 서비스교육 실시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앤모빌리티택시 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는 가맹점에게 별도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나비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앤모빌리티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최소시간	비용
서비스교육	서비스 제공방법	휴차 조별 강의	월1회	실비
단말기교육	단말기사용법 이상시 조치 등	휴차 조별 강의	신제품발생시 업그레이드시	실비
친절/청결교육	차량, 복장청결 친절	휴차 조별 강의	월1회	실비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귀하 즉 가맹계약을 맺는자(개인택시운전자) 또는 종사자(법인택시)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받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사자들이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신규서비스 교육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사자는 신규서비스 교육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해당사항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없음

별첨1. 나비콜 서비스명, 권장가격 및 수수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재무자료 (2024년~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